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66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김태선 · 이훈기 · 서미화
윤후덕 · 이학영 · 강준현
한민수 · 허종식 · 서왕진
어기구 · 민병덕 · 김주영
박 정 · 김영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의 평화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6. 02. 26. 선고, 2021헌바168 등).

이에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벌칙 조항에서 비록 신고 절차를 누락하였더라도 소음 제한 및 주최자·참가자 준수 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평화롭게 진행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의 주최자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절차 위

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의 자유 간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각 호 신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2.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옥외집회로서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제외한다.
3.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벌칙) ① (생 략)</p> <p>② <u>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u>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 ④ (생 략)</p>	<p>제2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u>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u>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u></p> <p>2. <u>관할 경찰서장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옥외집회로서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제외한다.</u></p> <p>3. <u>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